

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055 호】

2014년 03월 07일 (금)

선 람	기 관 의 장

회 랑							
-----	--	--	--	--	--	--	--

차 례

입 법 예 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11호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	------------------------	---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4-74호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특별계획구역(특7-L2-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8
고양시 고시 제2014-76호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도시계획 결정 (변경) 고시	65
고양시 고시 제2014-77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71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14-3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99, 소로2-383호선(자유로 부체도로)} 사업 실시계획 공고	73
고양시 공고 제2014-378호	도시계획시설(대로1-11호선 외 3개 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81
고양시 공고 제2014-381호	고양시 정보화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82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14-104호	공인신조 및 폐기 공고	85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14-83호	공인신조 및 폐기 공고	86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3 월 7 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공개경쟁 가입과 공용차량 운영현황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및 안전행정부 공용차량 교체기준 제도개선 사항 및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명시된 용어로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골자

- 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공개경쟁 가입”과 “공용차량 운영현황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에 따른 규칙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17조 제5항 및 제24조)
- 나.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대상인 공용차량교체기준을 승용차(업무용), 화물용, 승합(경·소·중형)용 자동차 최단운행 연수 10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 연수 7년 이상)으로 변경함(안 별표 1)
- 다. 에너지 절감차량 및 친환경적인 자동차 구매를 위해 규칙에 명시함(안 제8조)
- 라. 관용, 공용차량 두 가지 제명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공용”으로

통일하고,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에 명시된 용어로
변경 하고자 함.

마. 승용차량 기준 정수 대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2)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년 3 월 27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회계과장)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031-8075-251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고양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의회사무국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배정 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차량·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의회사무국을 말한다.
11.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차량의 구분) ① 차량의 종류는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별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차량정수관리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6조(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의 교체)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④ 제2·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교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의 신규구입·교체구입·관리전환을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정 및 교환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 될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한다. 다만, 소요조회 중인 차량은 차후 결과에 따라 처리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차종으로 교체 구입하는 경우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12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규모 · 유형별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단위 행정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6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차량의 운행관리

제17조(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차량의 관리방법) 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③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행

관리만 담당한다.

④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되며,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위치 및 방법에 따라 슬로건(시 마크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차량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법을 통하여 한 번에 청약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10대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배차신청)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하루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차량배차를 신청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차량배차 승인서를 당직사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배차승인)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차량운행신청 허가는 당직사령이 행한다.

제21조(유류의 구입)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격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체결한 유류공급자에게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제22조(유류사용의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에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차량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2. 차량운행일지
3. 차량배차 및 운행승인대장
4. 차량유류수불대장
5. 차량정비대장
6. 그 밖에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4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차량의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점검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 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운영 사항
2. 차량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6조(차고운영)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주차지·세차장·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집중관리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에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4장 운전원 관리

제27조(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8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차량관리부서의 지시 없이 담당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 받은 운행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
11.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12. 산하기관·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료를 공급받는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제29조(안전운전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해당 차량의 구조·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0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가해자·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1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벌칙금·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32조(안전교육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운전원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 소속 차량 운전 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차량 직원자가운전제

제34조(직원자가운전제)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이 직접운전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원자가운전 차량은 중·대형승합, 대형 화물차량을 제외한 승용·소형(중형), 승합, 화물차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④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 배차를 받은 때부터 주유 및 차량청소 등을 의무화한다.

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자가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직원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전국

으로 한다. 다만, 1박2일 이상 관외출장 시에는 집중관리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제36조(자가운전대상) 단위행정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면허종류 및 연령에 따라 배차 승인한다. 단, LPG차량은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제37조(유류정산) 차량운행 전 유류 잔량 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출장 중 유류 주입 시에는 집중관리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제38조(운행종료)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운행 후 차량 배차 시스템내의 운행 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미리 알려주어 정비·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선으로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 근무시간 이후 운전원(자가운전자)은 차량을 차고에 입고한 후 차량 열쇠를 당직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중 차량운행허가, 운행차량 입고유무 등 선량한 차량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이전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이전 차형구분에 따라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을 교체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것으로 본다.

소관과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회계과장 노 양 호
	팀 장 성 명	계약관리1팀장 신 영 호
	담 당 자 성명 · 전화	윤 영 용 (031-8075-2514)

[별표 1]

관용차량의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제4조 관련)

용도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최단운행연한
승용 (전용)	대형승용차(3,300cc이하)	○ 시장 ○ 의회의장 ○ 의전용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및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대형승용차(2,800cc이하)	○ 부시장 ○ 구청장	
승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 시본청 ○ 구청 ○ 시의회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7년 및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소형승용차	• 단위행정기관	
	경형승용차	• 단위행정기관	
	다목적승용차	• 단위행정기관	
승합용	대형승합차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간
	중형승합차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7년 및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소형승합차	• 단위행정기관	
	경형승합차	• 단위행정기관	
화물용	대형화물차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7년 및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중형화물차	• 단위행정기관	
	소형화물차	• 단위행정기관	
	경형화물차	• 단위행정기관	

특수용	청소차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구급차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소방장비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분노차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소방장비는 「소방기본법」 규정 준용)
	진료차	• 단위행정기관	
	이동수리차	• 단위행정기관	
	트럭트렉타	• 단위행정기관	
	트레일러	• 단위행정기관	
	렉카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고가사다리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굴절사다리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방수탑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화학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배연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조명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펌프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물탱크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구조공작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구급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지휘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순찰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진단차	• 단위행정기관	
	기타	• 단위행정기관	

※ 비고 : 위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규 모 별		
		대 형 승 용 차	중 형 승 용 차	그 밖의 승용차
시본청	35대	3대(의전용1대, 시장전용1대, 부시장전용1대)	2대(업무용 2대)	30대
구청	17대	1대(구청장전용)	1대(업무용)	15대
사업소	6대	-	1대(업무용)	5대
시의회	4대	1대(의장전용)	2대(의전용 1대, 업무용1대)	1대

※비고

1. 친환경자동차 및 경형승용차는 그 밖의 승용차 기준정수에서 제외 한다.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정대상 및 대수
통 근 용	통근인원 · 통근거리 ·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기관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교육훈련용	교육인원 · 교육횟수 · 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차량과 대수를 배정
긴급재난용	각종 재난 · 재해 현장 활동 등 대단위 인력동원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규모의 차량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사 업 용	각종 설비탐재, 지도 · 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 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사업별	배정대상 및 대수
도로사업용	도로의 연장 · 도로상태 · 교통량 및 유지 · 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산림및보건환경 사업용	산림의 보호, 육성 및 보건환경 운영관리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로 적절한 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	지방세 규모와 부과 · 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각종단속용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 · 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로 적절한 대수 배정
긴급 재난용	각종 재난 · 재해 현장 활동 등 물자수송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규모의 차량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사업용	사업용으로 현장지도 · 감독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사업량 등 사업 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량과 대수를 배정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사업별	배정대상 및 대수
긴급재난용	화재나 재해 등 같은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소방용 등의 장비를 갖춘 특수차를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대수를 배정. 다만,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용차량은 승용차량, 승합용차량 중에서 배정할 수도 있다.
그 밖의 사업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별표 3]

공용차량정수번호부여표 (제10조 관련)

1. 용도별, 규모 또는 유형별 분류번호

용도별	규모 또는 유형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다목적승용차	가1 가2 가3 가4 가5
승합용차량	• 대형승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	나1 나2 나3 나4
화물용차량	•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	다1 다2 다3 다4
특수용차량	•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용 도 별	규모 또는 유형	분 류 번 호
특 수 용 차 량	• 소방차	라10
	• 고가사다리차	라10-1
	• 굴절차	라10-2
	• 방수탑차	라10-3
	• 화학차	라10-4
	• 배연차	라10-5
	• 조명차	라10-6
	• 펌프차	라10-7
	• 물탱크차	라10-8
	• 구조공작장비운전차	라10-9
	• 구급차	라10-10
	• 지휘차	라10-11
	• 순찰차	라10-12
	• 진단차	라10-13
	• 구난차	라10-14
	• 다목적차	라10-15
	• 기타소방차	라10-16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라11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 고양시에서 소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고양 - 다3 - 003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인

제 목 : 차량정수배정요청

1.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 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용도	③ 규모 · 유형	④ 차 이름	⑤ 연식	⑥ 사용 부서	⑦ 요청 정수	⑧정수요청 구분 (신규 또는 관리전환)	⑨차량구입 비및운영비 책정예산액	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	⑪비 고
			()							

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적는다.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인

제 목 : 차량교체 승인요청

1.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를 요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용도	③ 규모 · 유형	④ 차 이름	⑤ 년식	⑥ 기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 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 고
		()							

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용도	③ 규모 · 유형	④ 차 이름	⑤ 년식	⑥ 차량 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	⑦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	⑨ 비 고
			()					

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적는다.

첨부 :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인

제 목 : 차량교환승인요청

1.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

① 규모 · 유형	② 차 이 름	③ 연 식	④ 기 관 번 호	⑤ 등 록 번 호	현 재		변 경		⑩ 비 고
					⑥ 차 량 소속기관	⑦ 사 용 부 서	⑧ 차 량 소속기관	⑨ 사 용 부 서	
	()								

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적는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인

제 목 : 차량정수 배정
차량 관리전환
차량 교체승인

확인서 송부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등 록 할 차 량		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	차량의표시	구 분	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		⑧차량소속기관	
②규모·유형		⑨규모·유형	
③차 이 름	()	⑩차 이 름	()
④연 식		⑪연 식	
⑤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차량 구분		⑫기 관 번 호	
⑥등 록 번 호		⑬등 록 번 호	
⑦비 고		⑭비 고	

※기재요령

-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인 제 목 : 차량교환승인확인서송부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구 분	차 량 의 표 시
①규모·유형	
②차 이 름	
③연 식	
④기 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인

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1.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	② 차량소속 기 관	③ 차 이 름	④ 연 식	⑤ 기 관 번 호	⑥ 등 록 번 호	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	⑧ 비 고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적는다.

첨부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량신규정수 · 차량교체 ·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나. 정 원 : 명 (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공용차량 보유대수

용도별	규모 · 유형	차 이 름	차량정수 배 정 일	등 록		배치부서	용 도
				번 호	일 자		

나. 증차사유 (정수이체를 포함한다)

[작성요령]

- ①기구 · 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 · 정원을 비교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②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차량교체사유

[작성요령]

- ①최단운행기준연한의 초과여부를 기재한다.
- ②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총운행거리를 기재한다. (주행거리계의 사진을 첨부한다)
- ③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수리비 총액을 기재한다.
- ④수리견적내용을 기재한다. (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를 첨부한다)
- ⑤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사고장소·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한다)
- ⑥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⑦그 밖의 참고 사항을 기재한다.

라. 차량교환사유

(1)-----

(2)-----

마. 예산소요판단

- (1) 총소요예산 : 천원
- (2) 차량구입비 : 천원
- (3) 운전원인건비 : 천원
- (4) 차량유지비 : 천원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1) 지역특수성 :
- (2) 행정구역 :
- (3) 면 적 :
- (4) 가 구 :
- (5) 인 구 :

사. 차량운행수요

(년도기준)

출 장 업 무 명	차 량 운 행		승 차 인 원			비 고
	회 수	거 리	연 간	월 간	일 일	
계						

[비고] 사업용차량은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기재한다.

20 년도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1.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

승용(업무용)						승합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 중·감 사유 :

2. 차량 운영관리 현황

총 보유수	합계(원)	총 유류비(원)	총 보험료(원)	총 수리비(원)	세금 및 부담금(원)
대					

3. 전용차량 운영관리 현황

사용자	차 이름	배기량(cc)	구입비(천원)	차량등록일	운행일수(일)

주행거리(km)	유류비(원)	수리비(원)	보험료(원)	자동차세(원)

4. 차량 교체(구입 및 매각) 현황

교체(매각)차량					
차 이름	배기량(cc)	차량등록일	총 주행거리	총 운행기간	매각사유

교체(구입)차량						
차량등록번호	용도	차 이름	배기량(cc)	차량등록일	구입가격(천원)	구매사유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신 설> 2. "차량정수"라 함은 자동차를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8.(생략) 9. "단위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시의 실·과, 시의회사무국 및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10. (생략) 11. "정비"라 함은 관용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뜻은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의회사무국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 4.~9.(현행 제3호부터 제8호와 같음) 10. "단위행정기관"이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의회사무국을 말한다.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삭 제>

현행	개정안
12.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제7조 (차량교체 승인) ①단위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u><신설></u> <u><신설></u>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u><삭제></u> 12. (현행 제13호와 같음) 제7조(차량의 교체) ① 단위행정기관의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④ 제2·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현행	개정안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비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이상인 경우(승용차·소형승합차(특수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 이거나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대기환경개선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관용차량의 관리방법) ①~④ (생략) <신설>	제18조(차량의 관리방법) ①~④(현행과 같음) ⑤ 차량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법을 통하여 한 번에 청약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10대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제20조 (유류의 구입등) 단위기관의 장은 관용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 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격을 단가계약 하거나 또는 후불정산계약·카드제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21조(유류의 구입)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격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체결 하거나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체결한 유류공급자에게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u> <u>제24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의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제20조 (유류의 구입등) 단위기관의 장은 관용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 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격을 단가계약 하거나 또는 후불정산계약·카드제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21조(유류의 구입)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격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체결 하거나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체결한 유류공급자에게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u> <u>제24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의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별표 1] 관용차량의 차종별·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별표 1] 관용차량의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제4조 관련)			
차종	차형	배정대상	최단운행 기준연한	용도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최단운행연한
승용 (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800cc이상)	- 시장 - 의회의장 - 의전용	7년 및 총 주행 거리 12만 km 이상	승용 (전용)	대형승용차 (3,300cc이하)	- 시장 - 의회의장 - 의전용	차량의 최초등록일 로부터 7년 및 최단주행거 리 12만km 이상
	대형승용차 (배기량 2,800cc미만)	- 부시장 - 구청장			대형승용차 (2,800cc이하)	- 부시장 - 구청장	
승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배기량 2,000cc미만)	- 시본청 - 구청 - 시의회	7년 및 총 주행 거리 12만 km 이상	승용 (업무 용)	중형승용차	- 시본청 - 구청 - 시의회	차량의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7년 및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소형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소형승용차	단위행정기관	
	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 을 말한다)	○ 단위기관			경형승용차	단위행정기관	
	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 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 류되는 차량 을 말한다)	○ 단위기관			다목적승용차	단위행정기관	
				승합 용	대형승합차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간
					중형승합차	단위행정기관	
					소형승합차	단위행정기관	
					경형승합차	단위행정기관	
				화물 용	대형화물차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7년 및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중형화물차	단위행정기관	
					소형화물차	단위행정기관	
					경형화물차	단위행정기관	

현행				개정안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36인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간	특수용	청소차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 터 7년간
	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16인 이상 35인이하 의 차량을 말한 다)	○ 단위기관	7년 및 총 주 행거리 12만km		구급차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 터 7년간 (소방장 비는 「소방기 본법」 규정 준용)
	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1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이상		분뇨차	•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 터 7년간 (소방장 비는 「소방기 본법」 규정 준용)
	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진료차	• 단위행정기관	
					이동수리차	• 단위행정기관	
			트럭트렉터		• 단위행정기관		
			트레일러		• 단위행정기관		
			렉카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고가사다리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굴절사다리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방수탐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화학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배연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조명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펌프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물탱크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구조공작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구급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지휘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순찰차		• 단위행정기관		
			소방진단차		• 단위행정기관		
			기타		• 단위행정기관		
화물용	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7년 및 총 주 행거리 12만km	※ 비고 : 위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5톤초과 5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이상				
	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5톤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경형화물차 (배기량1,0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현행			개정안
특수용	청소차	○단위기관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 7년 이상
	구급차	○단위기관	
	분뇨차	○단위기관	
	진료차	○단위기관	
	이동수리차	○단위기관	
	트럭트렉타	○단위기관	
	트레일러	○단위기관	
	렉카차	○단위기관	
	소방고가사다리차	○단위기관	
	소방굴절사다리차	○단위기관	
	소방방수탐차	○단위기관	
	소방화학차	○단위기관	
	소방배연차	○단위기관	
	소방조명차	○단위기관	
	소방펌프차	○단위기관	
	소방물탱크차	○단위기관	
	소방구조공작차	○단위기관	
	소방구급차	○단위기관	
	소방지휘차	○단위기관	
	소방순찰차	○단위기관	
	소방진단차	○단위기관	
	기타	○단위기관	

현행	개정안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table><tr><th rowspan="2">차량정수 배정대상 기관</th><th rowspan="2">기준 정수</th><th colspan="3">차형별</th></tr><tr><th>대형승용차</th><th>중형승용차</th><th>기타 승용차</th></tr><tr><td>시본청</td><td>10대</td><td>3대(의전용1대, 시장전용1대, 부시장전용1대)</td><td>2대(업무용 2대)</td><td>5대</td></tr><tr><td>구청</td><td>3대</td><td>1대(구청장전 용)</td><td>1대(업무용)</td><td>1대</td></tr><tr><td>사업소</td><td>1대</td><td>-</td><td>-</td><td>1대</td></tr><tr><td>시의회</td><td>3대</td><td>1대(의장전용)</td><td>2대(의전용 1대, 업무용1대)</td><td>-</td></tr></table> ※ 친환경자동차 및 경형승용차는 기타승용차 기준정수에서 제외 한다. 2.~4.(생략)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관	기준 정수	차형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기타 승용차	시본청	10대	3대(의전용1대, 시장전용1대, 부시장전용1대)	2대(업무용 2대)	5대	구청	3대	1대(구청장전 용)	1대(업무용)	1대	사업소	1대	-	-	1대	시의회	3대	1대(의장전용)	2대(의전용 1대, 업무용1대)	-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table><tr><th rowspan="2">차량정수 배정대상 기관</th><th rowspan="2">기준 정수</th><th colspan="3">규모별</th></tr><tr><th>대형승용차</th><th>중형승용차</th><th>그 밖의 승용차</th></tr><tr><td>시본청</td><td>35대</td><td>3대(의전용1대, 시장전용1대, 부시장전용1대)</td><td>2대 (업무용2대)</td><td>30대</td></tr><tr><td>구청</td><td>17대</td><td>1대(구청장전용)</td><td>1대(업무용)</td><td>15대</td></tr><tr><td>사업소</td><td>6대</td><td>-</td><td>1대(업무용)</td><td>5대</td></tr><tr><td>시의회</td><td>4대</td><td>1대(의장전용)</td><td>2대 (의전용 1대, 업무용1대)</td><td>1대</td></tr></table> ※비고: 친환경자동차 및 경형승용차는 그 밖의 승용차 기준정수에서 제외 한다. 2.~4.(현행과 같음)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관	기준 정수	규모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그 밖의 승용차	시본청	35대	3대(의전용1대, 시장전용1대, 부시장전용1대)	2대 (업무용2대)	30대	구청	17대	1대(구청장전용)	1대(업무용)	15대	사업소	6대	-	1대(업무용)	5대	시의회	4대	1대(의장전용)	2대 (의전용 1대, 업무용1대)	1대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관			기준 정수	차형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기타 승용차																																																					
시본청	10대	3대(의전용1대, 시장전용1대, 부시장전용1대)	2대(업무용 2대)	5대																																																					
구청	3대	1대(구청장전 용)	1대(업무용)	1대																																																					
사업소	1대	-	-	1대																																																					
시의회	3대	1대(의장전용)	2대(의전용 1대, 업무용1대)	-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관	기준 정수	규모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그 밖의 승용차																																																					
시본청	35대	3대(의전용1대, 시장전용1대, 부시장전용1대)	2대 (업무용2대)	30대																																																					
구청	17대	1대(구청장전용)	1대(업무용)	15대																																																					
사업소	6대	-	1대(업무용)	5대																																																					
시의회	4대	1대(의장전용)	2대 (의전용 1대, 업무용1대)	1대																																																					

현행	개정안																																																																																																																																																																																																																																	
<신설>	[별지 제9호서식] 20년도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1.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6">승용(업무용)</th> <th colspan="5">승합용</th> </tr> <tr> <th>소계</th> <th>대형</th> <th>중형</th> <th>소형</th> <th>경형</th> <th>다목적형</th> <th>소계</th> <th>대형</th> <th>중형</th> <th>소형</th> <th>경형</th> </tr> </thead> <tbody>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5">화물용</th> <th colspan="5">특수용</th> </tr> <tr> <th>소계</th> <th>대형</th> <th>중형</th> <th>소형</th> <th>경형</th> <th>소계</th> <th>대형</th> <th>중형</th> <th>소형</th> <th>경형</th> </tr> </thead> <tbody>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 증·감 사유 : 2. 차량 운영관리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총 보유수</th> <th>합계(원)</th> <th>총 유류비(원)</th> <th>총 보험료(원)</th> <th>총 수리비(원)</th> <th>세금 및 부담금(원)</th> </tr> </thead> <tbody> <tr> <td>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3. 전용차량 운영관리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용자</th> <th>차 이름</th> <th>배기량(cc)</th> <th>구입비(천원)</th> <th>차량등록일</th> <th>운행일수(일)</th> </tr> </thead> <tbody>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주행거리(km)</th> <th>유류비(원)</th> <th>수리비(원)</th> <th>보험료(원)</th> <th>자동차세(원)</th> </tr> </thead> <tbody>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4. 차량 교체(구입 및 매각)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6">교체(매각)차량</th> </tr> <tr> <th>차 이름</th> <th>배기량(cc)</th> <th>차량등록일</th> <th>총 주행거리</th> <th>총 운행기간</th> <th>매각사유</th> </tr> </thead> <tbody>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6">교체(구입)차량</th> </tr> <tr> <th>차량등록번호</th> <th>용도</th> <th>차 이름</th> <th>배기량(cc)</th> <th>차량등록일</th> <th>구입가격(천원)</th> <th>구매사유</th> </tr> </thead> <tbody>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승용(업무용)						승합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총 보유수	합계(원)	총 유류비(원)	총 보험료(원)	총 수리비(원)	세금 및 부담금(원)	대						사용자	차 이름	배기량(cc)	구입비(천원)	차량등록일	운행일수(일)																			주행거리(km)	유류비(원)	수리비(원)	보험료(원)	자동차세(원)																교체(매각)차량						차 이름	배기량(cc)	차량등록일	총 주행거리	총 운행기간	매각사유																			교체(구입)차량						차량등록번호	용도	차 이름	배기량(cc)	차량등록일	구입가격(천원)	구매사유																					
승용(업무용)						승합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총 보유수	합계(원)	총 유류비(원)	총 보험료(원)	총 수리비(원)	세금 및 부담금(원)																																																																																																																																																																																																																													
대																																																																																																																																																																																																																																		
사용자	차 이름	배기량(cc)	구입비(천원)	차량등록일	운행일수(일)																																																																																																																																																																																																																													
주행거리(km)	유류비(원)	수리비(원)	보험료(원)	자동차세(원)																																																																																																																																																																																																																														
교체(매각)차량																																																																																																																																																																																																																																		
차 이름	배기량(cc)	차량등록일	총 주행거리	총 운행기간	매각사유																																																																																																																																																																																																																													
교체(구입)차량																																																																																																																																																																																																																																		
차량등록번호	용도	차 이름	배기량(cc)	차량등록일	구입가격(천원)	구매사유																																																																																																																																																																																																																												

참고 1 관계법령 및 현행 규정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8.3]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차량 및 대통령경호실의 차량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3]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영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3]

제5조(차량의 정수 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차량 총정수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총정수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정수의 범위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별로 차량의 정수를 배정한다.[전문개정 2011.8.3]

제6조(차량 정수의 소멸 등) ① 각급 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해당 행정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행정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간 차량의 정수 이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에 차량의 정수 이체를 했을 때에는 이체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이체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3]

제7조(차량의 교체)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8.3]

제7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8.3]

제8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8.3]

제9조(차량의 등록)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3]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8.3]

제11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12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3]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 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호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28조 (등록) 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고양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라 함은 자동차를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라 함은 관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차량·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시의 실·과, 시의회사무국 및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의 관리와 관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

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라 함은 관용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직원자가운전제"라 함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단위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차량정수관리

제5조(정수배정) ① 관용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6조(배정요청)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이상인 경우(승용차·소형 승합차(특수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 이거나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대기환경개선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 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및 교환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한다. 다만, 소요조회중인 차량은 차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1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차종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대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11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단위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

제13조(관용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관용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5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관용차량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관용차량의 운행관리

제16조(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기관의 장은 관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관용차량을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관용차량의 관리방법) 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관용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 예산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관용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기타 관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③ 단위기관의 관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용도나 수익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위치 및 방법에 따라 "공무수행"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제2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제18조(배차신청) ① 관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용차량배차관리시스템에서 집중관리부서로부터 배차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일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용차량배차 승인서를 당직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배차승인) ① 집중관리부서는 관용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용차량 배차운행신청은 집중관리부서 장이 허가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차량운행신청 허가는 당직책임관이 행한다.

제20조(유류의 구입등) 단위기관의 장은 관용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격을 단가계약 하거나 또는 후불정산계약·카드제등으로 구

입할 수 있다.

제21조(유류사용 정산) ① 관용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에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새울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호의 서류를 전산화 관리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새울행정시스템에서 전산화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2. 관용차량운행일지 (별지 제9호서식)
3. 관용차량배차 및 운행승인대장 (별지 제10호서식)
4. 관용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11호서식)
5. 관용차량정비대장 (별지 제12호서식)
6. 기타 관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3조(지도·점검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단위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운영 사항
2. 관용차량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4조(차고운영)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주차지·세차장·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

서 차고 장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집중관리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에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4장 운전원 관리

제25조(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관용차량을 관리한다.

② 운전원은 관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6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차량관리부서의 지시 없이 담당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관용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 받은 운행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
11. 배차되지 아니한 관용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12. 산하기관·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제27조(안전운전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당해 관용차량의 구조·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8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중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가해자·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29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주·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전용차선위반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30조(안전교육등)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1회이상 자체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 차량 운전 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관용차량 직원자가운전제

제32조(직원자가운전제) ① 단위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관용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직원자가운전 관용차량은 중·대형승합, 대형 화물차량을 제외한 승용·소형(중형) 승합, 화물차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관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 ④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 배차를 받은 때부터 주유 및 차량청소 등을 의무화한다.

제33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직원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1박2일 이상 관외출장 시에는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 (자가운전대상) 단위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면허종류 및 연령에 따라 배차 승인한다. 단, LPG차량은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제35조 (유류정산) 관용차량운행 전 유류 또는 가스(LPG) 보충 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하며, 추가연료 주입 시 집중관리부서와 협의 후 주입한다.

제36조 (운행종료)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운행 후 관용차량 배차 시스템내의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관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용차량을 반납할 때에 알려서 정비·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

-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관용차량을 반납할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 ③ 근무시간 이후 운전원(자가운전자)은 차량을 차고에 입고한 후 차량열쇠를 당직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④ 당직책임관은 당직 중 차량운행허가, 운행차량 입고유무 등 선량한 차량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참고 2

그 밖의 참고사항

00시·도 / 시·군·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4조(차량의 구분 등) (현행과 같음)

제5조(차량의 정수 배정) (현행과 같음)

제6조(차량 정수의 소멸) (현행과 같음)

제7조(차량의 교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현행과 같음)

제8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현행과 같음)

제9조(차량의 등록) (현행과 같음)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전원 관리)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용차량 직접운전) (현행과 같음)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특별계획구역(특7-L2-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세부개발계획으로 결정(변경)(2013년 3월 5일)된 특별계획구역(특7-L2-1)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3. 7.

고 양 시 장

□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역 명	용 도 지 역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한국국제전시장 특별계획구역 특7 (특L2-1)	일반상업지역	48,793.4	-	48,793.4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고시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한국국제전시장 특별계획구역 특7 (특L2-1)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6번지	48,793.4	-	48,793.4	고양시 고시 제2008-53호 (2008.05.28)	

나.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가 구 번 호	획 지 계 획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L2-1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606번지 일원	48,028.4	

라.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 경

(1)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 변경 없음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특7 (L2-1)	지정 용도 (비율)	□ 운동시설 (60%이상)	
	허용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목 :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목 :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것 제외) -라목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목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 일반음식점·기원 -나목 :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다목 : 서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라목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미만인 것 -마목 : 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종교집회장 제외) -바목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특7 (L2-1)	허용 용도	-사목 :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아목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함 -자목 : 사진관·표구점·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 제외)·장 의사·동물병원·독서실·충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목 :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목 :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의약품도매점 제외) -타목 : 노래연습장(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 공연장(서어커스장 제외)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목 : 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및 마권자화투표소 제외)으로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목 : 전시장 □ 관광휴게시설 □ 판매시설 중 -가목 : 도매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목 : 소매시장(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제외) -다목 :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위락시설 중 -나목 :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목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의료시설 중 -가목 : 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말한다) (종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외) □ 수련시설 중 -가목 : 생활권수련시설(유스호스텔에 한함)	

주1) 야외 운동시설(실외 썰매장, 실외 스케이트장, 실외 수영장) 및 스포츠 멀티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클리닉, 스포츠 관리실 등과 운동시설 내부에 설치되는 부대시설·편의시설은 지정용도 중 운동시설면적에 포함함.

주2) 위락시설의 경우 스포츠 레저의 개념에 부합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함.

주3) 의료시설의 경우 입원실이 없는 시설로서 치료의 목적(hospital)이 아닌 치유(clinic)의 성격을 가진 용도에 한함.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지침)	세부개발계획(기정)	세부개발계획(변경)
L2-1	건 폐 율(%)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177 이하	195 이하
	최고높이(m)	180m 이하	180m 이하	180m 이하

■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L2-1	■ 용적률 변경 - 177% 이하 → 195% 이하	■ 원마운트를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이용객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여유허간 및 이용이 낮은 시설을 활용한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판매시설 등의 확충(용도변경)에 따른 세부시설계획 변경

(3) 건축물의 배치·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결 정 내 용 (지침)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비고
배치 및 건축선	○ 건물의 방향성 : 건축물의 벽면은 접한 전면가로(폭 20m이상)의 방향과 일치하게 할 것을 권장함 ○ 건축선 :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등이 지정된 대지에는 그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설치하여야 함(결정도 참조) - 건축한계선 : 가로에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후퇴선으로 그 선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할 수 없음 - 벽면한계선 :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주벽면 또는 특정층의 벽면이 한계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으며, 벽면한계선의 적용에 있어 특정층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층 벽면을 그 대상으로 함.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대로2-15호선, 대로3-46호선 등 간선가로와 일치되게 배치하고 공원, 공공보행통로 등의 보행 흐름을 최대한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2-15호선과 대로3-46호선에 기 지정된 건축한계선을 준수하여 연속된 외벽을 유도하고, 건축물 외관 등에 질서를 유지하는 배치계획 수립 · 대로 3-46호선변 : 4m · 대로 2-15호선변 : 12m ~ 15m - 건축한계선의 운용에 따라 건축한계선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설계

(4)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결 정 내 용 (지침)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비고
형태 및 색채	○ 건축물의 형태 - 탑상형 : 주요간선변 및 가각부 필지내에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충분한 오픈스페이스가 확보가능하도록 건폐율을 40% 이하로 건축하여야 함 - 고층부 탑상형 : 주요간선가로변 필지에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고층부의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5층 이상부분에 대하여 건폐율 40% 이하로 건축하여야 함 - 저층부(5층 이하) : 활발한 가로활동의 유도를 위하여 규모, 디테일의 측면에서 휴먼스케일을 반영하도록 할 것 - 고층부(6층 이상) : 사업구역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유리 및 금속재료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외관을 표현하도록 할 것	○ 건축물의 형태 - 저층부(5층 이하) : 대로2-15호선, 대로3-46호선, 공공보행통로 등의 활발한 가로활동의 유도를 위하여 규모, 디테일 측면에서 실사용자들의 휴먼스케일을 최대한 반영한 형태 계획 수립 - 고층부(6층 이상) : 사업대상지의 미래지향적이고 활동적이며 역동적인 모습을 외관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조 및 형태계획을 수립하고 Sports의 Activity가 강조될 수 있는 Imagination ※ 외형의 변경으로 인해 건축허가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건축물의 형태변경으로 보며,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구조의 제한 - 1층부 : 건축물 중 2층부에 보행자 데크를 조성하 고자하는 경우 1층부 층고는 4.5m 이상 하여야 함	○ 구조의 제한 - 1층부 : 건축물 중 2층부에 보행자 데크를 조성하고자하는 경우 1층부 층고는 4m이상으로 함	
	○ 1층부 바닥높이 :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높이를 맞추거나 10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음	○ 건축물 1층의 바닥높이는 인접 보도와 높이를 동일하게 계획(단, 소방 등의 사유로 비상문 설치시는 제외) ○ 공공보행통로변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와 공공보행통로의 차이는 최대 15cm까지 허용 ○ 기준층고는 보행자의 활동에 따라 폐쇄감을 주지 않도록 3m이상으로 계획	
	○ 외벽처리(국제전시장부지 제외) - 투시벽 : 폭 20m 이상의 가로, 폭 15m 이상의 가로의 교차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공보행통로와 면한 건축물의 벽면은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하여야 함. 단, 허가권자가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셔터 : 폭 15m 이상의 도로, 보행자전용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와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 외벽처리 - 간선도로와 공공보행통로에 면한 건축물의 셔터는 투시형으로 함. - 건축물의 외벽은 가로경관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	
	○ 옥상처리 : 옥상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옥탑의 입면형태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옥상에는 반드시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을 설치하여야 함	○ 옥상처리 : 옥상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옥탑의 입면형태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옥상에는 반드시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을 설치하여야 함	
	○ 색채 및 재료 - 고층부(6층 이상) ■ 구조색 : 채도 2이하, 명도 8이상 ■ 보조색 : 채도 4이하, 명도 6이상 ■ 강조색 : 제한없음 - 저층부(5층 이하) ■ 구조색 및 보조색 : 채도 4이하, 명도 6이상 ■ 강조색 : 제한없음	○ 색채 및 재료 - 고층부(6층 이상) ■ 구조색 : 채도 2이하, 명도 8이상 ■ 보조색 : 채도 4이하, 명도 6이상 ■ 강조색 : 제한없음 - 저층부(5층 이하) ■ 구조색 및 보조색 : 채도 4이하, 명도 6이상 ■ 강조색 : 제한없음	
	○ 개구부 - 20m 폭 이상의 도로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1층 전면의 경우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조성하여야 함 - 1층 전면개구부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 개구부 - 20m 폭 이상의 도로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1층 전면의 경우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조성 - 1층 전면개구부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조성	
	○ 보행자데크 - 국제전시장 부지를 제외한 구역내 건축물은 2층부에 보행자 데크를 설치할 수 있음 - 보행자데크는 간선도로 혹은 도로와 면하는 부분에 설치되어야 하며 동일한 블록내의 인접 건축물과 연결되어야 함 - 조성방안에 관해서는 인허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보행자데크 - 사업대상지 남측 한류월드 UEC와의 보행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행자데크 설치 - 2층부에 보행자데크를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1층 기준 층고를 4m이상으로 함	

마. 대지내 공지 및 동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결 정 내 용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전면 공지	□ 전면공지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지를 전면공지로 조성 - 전면공지가 인도와 접한 경우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며, 특히 간선가로변 필지의 경우 보행자들을 위한 대기공간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전면공지가 차도와 접하는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를 제거하여야 함 - 전면공지와 도로(보행자도로포함)와의 경계부는 단차 15cm 미만으로 설치하며 식재 기준에 따라 조성(4m 이상 전면공지)하여야 함	□ 대로 3-46호선의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지를 전면공지로 조성 □ 전면공지는 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보행공간 확대를 유도하고, 보행자들을 위한 대기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 □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 허용 □ 전면공지와 도로(보행자도로포함)와의 경계부는 단차 15cm 미만으로 설치하며 식재 기준에 따라 조성 □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 이상의 교목을 줄지어 식재하고 수목 아래 바닥에 보행 통행이 가능하도록 수목 보호덮개를 하는 경우에는 6㎡의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 □ 전면공지는 접한 보도와 일체화된 구조로 조성(보도일체형) - 전면인도의 폭은 5m이상 확보하여 보행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 - 전면인도의 성격과 건축한계선을 고려하여 전면공지의 폭원은 4m로 결정 - 건축한계선 : 대로3-46호선(4m), 대로2-15호선(12m ~ 15m) □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포장패턴을 구분하여 조성	
공개 공지	□ 공개공지(결정도 참조) - 건축법 제67조에 의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어야 함 - 위치 : 결정도상의 표시된 곳에 공개공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개공지의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나 각각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형태 ■ 공개공지의 형태는 최소폭 5m 이상으로 하며, 최소면적은 45㎡이상으로 설치시 과도한 세장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장변 및 단변 중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변을 도로측에 접하게 함 ■ 설치형태는 일반적 형태, 피로티 구조, 쌈지공원(침상형)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 가능 ■ 피로티 구조로 설치시 유효높이 6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 가능 - 조성기준 : 관련법규정에 의함	□ 대로2-15호선의 기지정된 위치에 공개공지 확보 □ 공개공지의 조성은 전면의 인도 및 전면공지와 조성형태를 통일시켜서 조성 □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 의한 조성방법을 준수하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경면적 및 시설설치를 국지적으로 결정 □ 전면보도로부터 일정 폭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고, 출입구는 노약자·신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 바닥높이는 원칙적으로 보도와 동일하게 조성하고, 포장은 투수성재료로 함 □ 야간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되 주변에 식재된 수목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 1개소의 면적은 최소45㎡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15m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계획 □ 공개공지의 면적의 1/2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유효높이가 4m 이상으로 계획	

(2) 대지내 동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결 정 내 용 (지침)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비고
입체 공공 보행 통로	□ 입체연결통로 - 인접된 획지간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입체(지상, 지하)연결통로를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개설할 수 있음	□ 입체연결통로 - 한류월드 UEC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상호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입체연결통로 개설	
주차 차량 동선	□ 주차차량동선 - 폭 30m 이상의 도로변에서 차량출입 금지(원칙) - 개별필지의 주차 진출입은 연결도로 중 최하위도로에서 진출입 권장 - 단, 차량진입허용구간은 각 시설별 교통영향평가 심의로 변경될 경우는 각 시설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다.	□ 주차차량동선(결정도 참조) - 폭 30m 이상의 도로변에서 차량출입 금지(원칙) - 개별필지의 주차 진출입은 연결도로 중 최하위도로에서 진출입 권장 - 단, 차량진입허용구간은 각 시설별 교통영향평가 심의로 변경될 경우는 각 시설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결 정 내 용 (지침)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비고
옥상 조경	○ 건축물의 옥상 조경은 소관목 위주로 조성하며 휴게시설 (벤치, 파고라 등)을 설치	○ 옥상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에는 옥상조경공간을 조성함(등산로 설치) ○ 옥상조경 설치시 교목식재를 지양하고 소관목 위주로 조성하되, 높이 1m 이하의 관목밀식을 위주로 식재 ○ 옥상조경의 경우는 휴게시설(벤치,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제공	
옥외 광고 물	○ 건축물에 부착되는 옥외광고물은 불허 ○ 옥외광고물 부착시는 별도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모든 광고물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함 ○ 광고물 관련규정(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경기도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내 모든 건축물의 외벽에는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의 설치 불허하며, 광고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광고물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 ○ 건축물에 부착되는 간판 등 건축물 부속 광고물은 개별 건축허가시 위치, 형태 등을 지정하되 그에 따른 제반 규정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적용 ○ 고양시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옥외광고물 디자인 및 설치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광고물 설치계획 수립	
가로 경관 조경	○ 보행자전용도로 및 도로변을 따라 교목을 열식하고 하부 식생으로 관목 등을 식재하여 가로경관을 향상	○ 공공보행통로 및 도로변을 따라 교목을 열식하고 하부 식생으로 관목 등을 식재하여 가로경관을 향상	
조명 계획	○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에 대한 보행자 관찰용 조명등 설치 ○ 건축물을 비추는 조명등 설치 ○ 공개공지에 대한 야간조명등 설치	○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에 대한 보행자 관찰용 조명등 설치 ○ 건축물을 비추는 조명등 설치(하향조명 권장) ○ 공개공지에 대한 야간조명등 설치 및 운용 ○ 공공보행통로 변 보행유도등 설치	

□ 결정도 및 지형도면 : 시보 게재 생략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도시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탄현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한 도시계획(구역계변경,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및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7일

고 양 시 장

□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도시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사업지구 결정(변경)
 - 가. 도시계획사업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사업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탄현동 111-13번지 일원	199,351	감)1,167	198,184	

주) 기정면적은 2009.9.23. 도시계획(변경)결정(고양시고시 제2009-250호)을 따름

나. 도시계획사업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사업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①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면적변경 (감 1,167㎡)	· 일부 지적 불부합 경계 및 구적오차 조정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14	3,882	40,186	3	1,574	20,371	11	2,308	19,455	-	-	-
	변경	3	825	7,806	2	712	6,425	-	-	-	1	113	1,381
중로	기정	1	420	8,759	1	420	8,759	-	-	-	-	-	-
	변경	3	825	7,806	2	712	6,425	-	-	-	1	113	1,381
소로	기정	13	3,462	31,453	2	1,154	11,988	11	2,308	19,455	-	-	-
	변경	-	-	-	-	-	-	-	-	-	-	-	-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사용형태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중로	1	97	20-23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420	지구남측경계	지구북측경계	
변경	중로	1	97	20-26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420	지구남측경계	지구북측경계	
기정	소로	1	156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853	중2-28	중2-28	
변경	중로	1	115	2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292	중1-97	탄현동 97-7	폭원 확폭 및 노선축소
폐지	소로	1	157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301	소1-156	소2-252	
폐지	소로	2	245	8	"	"	285	소1-156	소2-254	
폐지	소로	2	246	8	"	"	114	소1-156	소1-157	
폐지	소로	2	247	8	"	"	197	소1-156	소2-249	
폐지	소로	2	248	8	"	"	283	소1-156	소2-245	
폐지	소로	2	249	8	"	"	295	소2-246	소2-252	
폐지	소로	2	250	8	"	"	241	소1-156	소1-157	
폐지	소로	2	251	8	"	"	86	소2-250	소2-252	
폐지	소로	2	252	8	"	"	405	중2-28	소2-250	
폐지	소로	2	253	8	"	"	114	소1-156	소2-252	
기정	소로	2	254	8	"	"	203	중2-28	소2-252	
변경	중로	3	187	12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113	중1-97	탄현동 117-71	폭원 확폭 및 노선축소
폐지	소로	2	255	8	일반도로	국지도로	85	소2-245	소2-254	

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1-97	중로1-97	노선일부 노폭확장 - 폭원(B)= 23m→26m - 연장(L) = 420m	급회 사업대상지(2구역)내 진입도로인 중로1-97호선의 일부구간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확장
변경	소로1-156	중로1-115	노선축소 및 노폭확장 - 폭원(B)= 10m→20m - 연장(L) = 853m→292m	사업대상지(2구역)의 공동개발에 따라 노선변경 및 확폭
폐지	소로1-157	-	노선폐지 - 폭원 : 10m, 연장 : 301m	사업대상지(2구역)의 공동개발에 따라 기능상실이 예상되는 내부 구획도로 노선 폐지
폐지	소로2-245	-	노선폐지 - 폭원 : 8m, 연장 : 285m	"
폐지	소로2-246	-	노선폐지 - 폭원 : 8m, 연장 : 114m	"
폐지	소로2-247	-	노선폐지 - 폭원 : 8m, 연장 : 197m	"
폐지	소로2-248	-	노선폐지 - 폭원 : 8m, 연장 : 283m	"
폐지	소로2-249	-	노선폐지 - 폭원 : 8m, 연장 : 295m	"
폐지	소로2-250	-	노선폐지 - 폭원 : 8m, 연장 : 241m	"
폐지	소로2-251	-	노선폐지 - 폭원 : 8m, 연장 : 86m	"
폐지	소로2-252	-	노선폐지 - 폭원 : 8m, 연장 : 405m	"
폐지	소로2-253	-	노선폐지 - 폭원 : 8m, 연장 : 114m	"
변경	소로2-254	중로3-187	노선축소 및 노폭확장 - 폭원(B)= 8m→12m - 연장(L) = 203m→113m	사업대상지(2구역)의 공동개발에 따라 노선변경 및 확폭
폐지	소로2-255	-	노선폐지 - 폭원 : 8m, 연장 : 85m	사업대상지(2구역)의 공동개발에 따라 기능상실이 예상되는 내부 구획도로 노선 폐지

나.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45	주차장	탄현동 97-7 일원	-	증)1,190	1,190	-	

2)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45	주차장	주차장 신설 (면적 : 1,190㎡)	사업대상지내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

다. 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3,960		
기정	㉔	어린이공원	탄현동 1634-1 일원	2,303		고고제2009-250호 (2009.09.23)
기정	㉕	어린이공원	탄현동 1634-2 일원	1,657		고고제2009-233호 (2009.09.03)

라. 공간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7,655	7,655		
신설	197	녹지	완충녹지	탄현동 97-7 일원	-	5,798	5,798	-	
신설	198	녹지	연결녹지	탄현동 106-4 일원	-	1,857	1,857	-	

2)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7	녹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5,798㎡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의 부족한 공원녹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경계부 완충녹지 신설
198	녹지	연결녹지 신설 면적 = 1,857㎡	전면도로와 탄현근린공원을 연계할 수 있는 녹지 및 보행축 조성이 가능한 연결녹지로 조성

마.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594	4,473	14,067		
기정	6	사회복지시설	탄현동 111-1대 일원	9,594	-	9,594	2001.10.10	
신설	62	사회복지시설	탄현동 106-4임 일원	-	4,473	4,473	-	

2)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설 면적 = 4,473㎡	장애인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신설

바. 교육시설(중학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2	학교	중학교	탄현동 117-60	12,000	-	12,000	1998.09.18	호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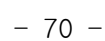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사용형태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중로	1	115	2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173	탄현동 97-7	김포~관산도로 경계	사업자 비용부담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도로의 등급 및 노선 등이 변경될 수 있음

5. 결정(변경)도면 : 따로 붙임 (게재 생략)

※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고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중 수역이, 동산, 삼송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보차혼용통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03월 07일

고 양 시 장

1. 변경사유 : 기결정된 보차혼용통로에 대하여, 관계된 토지소유자 동의하에 선형을 일부 조정함
- 수역이·동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일부 선형조정), 삼송 지구단위계획구역(누락오기 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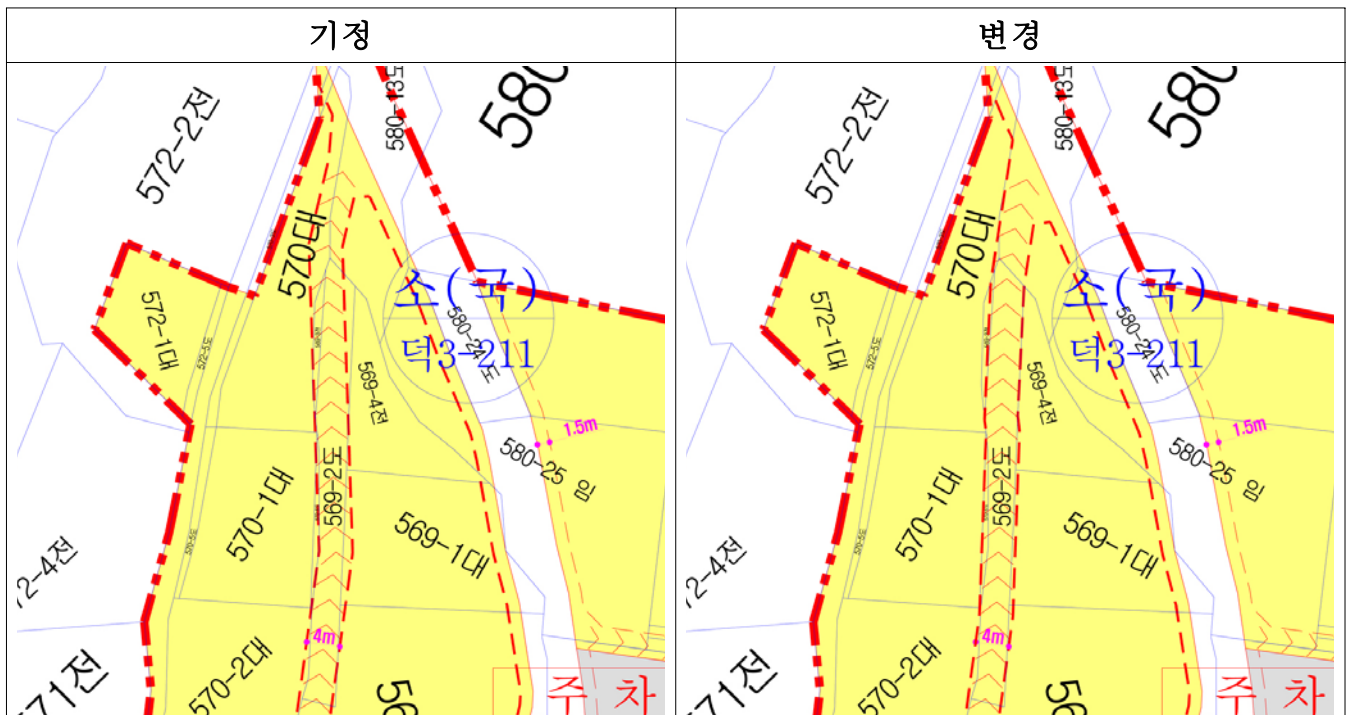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첨부 :

- 수역이 지구단위계획(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고양시 공고 제2014-3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99, 소로2-383호선(자유로 부체도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고양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99호선, 소로2-383호선(자유로 부체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을 위하여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 열람공고 합니다.
2.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7.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 작성의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26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자유로 부체도로(소로1-99호선, 소로2-383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

구분	구 모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소로	1	99	10.0	697	신평동3-261	신평동3-59	
금회 시행	소로	1	99	10.0	697	신평동3-261	신평동3-59	
결정	소로	2	383	8.0	579	신평동26-10	신평동25-4	
금회 시행	소로	2	383	8.0	360	신평동25-10	신평동25-61	

- 사업 목적 : 본 과업은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고양시장(덕양구청 건설과장)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작성일 ~ 201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조서참조”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같음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5)

2) 관계도서 : “계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 소로1-99호선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리	지적	지목	지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신평동	3-261	도	5,294	881	서울 강남구 논현동71-2	한국토지개발 공사				
2	“	3-31	도	23,221	4,132	“	“				
3	“	3-59	도	9,946	1,878	“	“				
4	“	26-17	도	31,512	92	“	“				
합계				69,973	6,983						

- 소로2-383호선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	지적	지목	지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신평동	26-16	답	1,119	83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49-48	김옥숙				
2	“	26-10	도	865	678	서울 강남구 삼성동 7-2 해청아파트 마동 201호	김묘주				
						미국 뉴욕시 우드사이드 54번가 39-60	민정기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 웨스트웨이 3017	민삼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23동 401호	민순기				
						서울 강남구 삼성동 7-2 해청아파트 마동 201호	민영기				
						미국 뉴욕주 크립톤파크 아스펜라인 8	민공기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	민창기				
						서울 종로구 평창동 49-1	민성기				
						서울 강남구 청담동 95 청담빌라 씨-1	민석기				
3	“	26-9	전	198	9	고양군 지도면 신평리 3-1	조복한				
						고양군 지도면 신평리 3-1	장석오				
4	“	26-11	답	1,117	85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229	윤학로				
5	“	26-279	도	26	1	고양군 지도읍 신평리 3-111	장석오				
6	“	26-8	전	278	13	고양군 지도읍 신평리 3-111	장석오				
7	“	26-12	목	1,762	129	고양군 지도읍 신평리 3-111	장석오				
8	“	25-176	도	7	7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26-85	이상도	고양 덕양 성사696-4	고양축산 업협동조 합	근저 당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	지적	지목	지적	면적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의종 류	
9	“	25-178	도	15	15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150-1	김경태	고양 덕양 토당330-3	지도농 협협동 조합	근저 당	
10	“	26-281	답	701	57	고양군 지도읍 신평리 3-111	장석오				
11	“	25-177	대	53	53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150-1	김경태	고양 덕양 토당330-3	지도농 협협동 조합	근저 당	
12	“	26-13	전	1,170	119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347-1	권오복				
13	“	25-123	대	332	19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7-53,218동1002호(수기마을 힐스테이트)	채준석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식회 사우리 은행	근저 당	
14	“	25-126	전	822	19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25-123	채준석				
15	“	25-122	대	330	4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43-1	최선오				
16	“	25-130	전	494	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43-1	최선오				
17	“	25-7	답	6,086	275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73-49	장석원	고양 덕양 토당330-3	지도농 협협동 조합	근저 당	
18	“	25-128	대	330	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43-1	최선오				
소계				15,705	1,570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의 조서

<소로1-99호선>

-지장물

순위	소재지	지번	종별	구조	수량	소유자		비고
					(EA)	주소	성명	
1	덕양구 신평동	3-222	비닐하 우스		1	고양군 지도읍 토당리 292-34 로알연립 나동303호	신병섭	
합계					1			

-한전주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신평동	STA 0+9.0	좌		한국전력공사	
2	“	STA 0+71.0	좌		“	
3	“	STA 0+131.5	좌		“	
4	“	STA 0+131.5	우		“	
5	“	STA 0+185.3	우		“	
6	“	STA 0+242.3	우		“	
7	“	STA 0+268.9	우		“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8	“	STA 0+296.7	우		“	
9	“	STA 0+320.9	우		“	
10	“	STA 0+352.0	우		“	
11	“	STA 0+381.6	우		“	
12	“	STA 0+414.5	우		“	
13	“	STA 0+440.6	우		“	
14	“	STA 0+477.5	우		“	
15	“	STA 0+508.1	우		“	
16	“	STA 0+534.3	우		“	
17	“	STA 0+535.8	우		“	
18	“	STA 0+583.8	우		“	
19	“	STA 0+606.1	우		“	
20	“	STA 0+626.6	우		“	
21	“	STA 0+655.7	우		“	
22	“	STA 0+691.1	우		“	

-통신주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신평동	STA 0+618.5	우		KT	
2	“	STA 0+619.2	우		“	
3	“	STA 0+654.6	우		“	
4	“	STA 0+691	우		“	

-우수맨홀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구조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신평동	STA 0-11.4	우		고양시	
2	“	STA 0+683.8	우		“	

-기타맨홀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구조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신평동	STA 0+13.0	우		고양시	
2	“	STA 0+40.0	좌		“	
3	“	STA 0+84.5	우		“	
4	“	STA 0+296.4	좌		“	
5	“	STA 0+536.9	좌		“	

-가로등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신평동	STA 0+33.8	좌		고양시	
2	“	STA 0+69.5	좌		“	
3	“	STA 0+107.0	좌		“	
4	“	STA 0+145.0	좌		“	
5	“	STA 0+180.5	좌		“	
6	“	STA 0+218.0	좌		“	
7	“	STA 0+255.3	좌		“	
8	“	STA 0+301.6	좌		“	
9	“	STA 0+339.6	좌		“	
10	“	STA 0+379.2	좌		“	
11	“	STA 0+409.1	좌		“	
12	“	STA 0+446.4	좌		“	

-기타지장물

순위	소재지	지번	종별	구조	수량 (EA)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덕양구 신평동	3-261	제수변		1		고양시	
2	“	3-18	간판		1	덕양구 화정동 870 은빛마을 551-1704	이종찬	
3	“	3-162	간판		1	덕양구 덕은동 391-4	이상운외1	
4	“	3-31	제어기		1		고양시	
5	“	3-244	간판		1	덕양구 화정동 851 달빛마을220-908	김현주	
6	“	3-337	간판		1	덕양구 토당동 292-34 로얄연립 나-306	박봉순	
합계					6			

-수목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신평동	STA 0+29.5	우	고양시	
2	“	STA 0+37.6	좌	“	
3	“	STA 0+43.8	좌	“	
4	“	STA 0+49.4	우	“	
5	“	STA 0+52.0	우	“	
6	“	STA 0+51.7	좌	“	
7	“	STA 0+53.4	우	“	
8	“	STA 0+59.5	우	“	
9	“	STA 0+59.8	좌	“	
10	“	STA 0+67.6	좌	“	
11	“	STA 0+69.0	우	“	
12	“	STA 0+72.6	우	“	
13	“	STA 0+76.2	좌	“	
14	“	STA 0+84.6	좌	“	
15	“	STA 0+92.8	좌	“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소관청	비고
16	“	STA 0+100.9	좌	“	
17	“	STA 0+109.4	좌	“	
18	“	STA 0+117.5	좌	“	
19	“	STA 0+125.9	좌	“	
20	“	STA 0+141.9	좌	“	
21	“	STA 0+150.1	좌	“	
22	“	STA 0+158.0	좌	“	
23	“	STA 0+166.2	좌	“	
24	“	STA 0+174.0	좌	“	
25	“	STA 0+182.3	좌	“	
26	“	STA 0+190.3	좌	“	
27	“	STA 0+206.1	좌	“	
28	“	STA 0+214.2	좌	“	
29	“	STA 0+222.3	좌	“	
30	“	STA 0+230.3	좌	“	
31	“	STA 0+238.3	좌	“	
32	“	STA 0+246.5	좌	“	
33	“	STA 0+252.6	좌	“	
34	“	STA 0+260.4	좌	“	
35	“	STA 0+268.5	좌	“	
36	“	STA 0+276.6	좌	“	
37	“	STA 0+284.0	좌	“	
38	“	STA 0+292.5	좌	“	
39	“	STA 0+308.6	좌	“	
40	“	STA 0+316.6	좌	“	
41	“	STA 0+324.7	좌	“	
42	“	STA 0+334.7	우	“	
43	“	STA 0+336.2	우	“	
44	“	STA 0+337.9	좌	“	
45	“	STA 0+345.8	좌	“	
46	“	STA 0+353.8	좌	“	
47	“	STA 0+361.9	좌	“	
48	“	STA 0+370.0	좌	“	
49	“	STA 0+377.5	좌	“	
50	“	STA 0+402.4	좌	“	
51	“	STA 0+419.6	좌	“	
52	“	STA 0+605.9	우	“	
53	“	STA 0+606.1	우	“	
54	“	STA 0+656.0	우	“	
55	“	STA 0+656.0	우	“	

< 소로 2-383호선>

-지장물

순위	소재지	지번	종별	구조	수량	소유자		비고
					(EA)	주소	성명	
1	덕양구 신평동	26-11	비닐하우스		1	신평동 3-229	윤학로	
2	“	26-9	비닐하우스		1	신평리 3-1	조복한외1	
3	“	26-11	비닐하우스		1	신평동 3-229	윤학로	
4	“	26-12	건물		1	신평리3-111	장석오	
5	“	26-12	축사		1	신평리3-111	장석오	
6	“	26-281	비닐하우스		1	신평리3-111	장석오	
7	“	3-122	비닐하우스		1	신평리 3-1	김순산	
8	“	3-124	비닐하우스		1	화정리 457-2	전종산	
합계					8			

-한전주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신평동	STA 0+35.3	좌		한국전력공사	
2	“	STA 0+80.1	좌		“	
3	“	STA 0+127.1	좌		“	
4	“	STA 0+170.1	좌		“	
5	“	STA 0+208.3	우		“	
6	“	STA 0+215.3	좌		“	
7	“	STA 0+260.3	좌		“	
8	“	STA 0+306.5	좌		“	
9	“	STA 0+344.8	좌		“	

-통신주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신평동	STA 0+27.3	좌		KT	
2	“	STA 0+27.3	우		“	
3	“	STA 0+81.7	좌		“	
4	“	STA 0+124.2	좌		“	
5	“	STA 0+166.1	좌		“	
6	“	STA 0+210.4	좌		“	
7	“	STA 0+253.7	좌		“	
8	“	STA 0+300.0	좌		“	
9	“	STA 0+305.1	우		“	
10	“	STA 0+339.5	좌		“	

-우수맨홀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구조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신평동	STA 0+51.5	좌		고양시	
2	“	STA 0+51.5	우		“	
3	“	STA 0+120.6	좌		“	

-가스맨홀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구조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신평동	STA 0+278.1	우		고양시	
2	“	STA 0+346.0	우		“	

-웬스

순위	소재지	지번	종별	구조	수량 (EA)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덕양구 신평동	3-224			1	주교동562-9 삼화 가동103호	오준태	
2	“	26-16			1	안양시 만악구 안양동 149-48	김옥숙	
3	“	26-12			1	신평리3-111	장석오	
4	“	26-12			1	신평리3-111	장석오	
5	“	25-123			1	신평동 25-123	채준석	
6	“	25-126			1	신평동 25-123	채준석	
합계					6			

-기타지장물

순위	소재지	지번	종별	구조	수량 (EA)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덕양구 신평동	26-281	계량기		1	신평리3-111	장석오	
2	“	25-128	계량기		1	행신동 43-1	최선오	
3	“	25	정화조		1	신평동 25	이석용	
4	“	25	정화조		1	신평동 25	이석용	
합계					4			

-수목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신평동	STA 0+ 35	우	고양시	
2	“	STA 0+ 37.9	우	“	
3	“	STA 0+ 40.5	우	“	
4	“	STA 0+ 54.8	좌	“	
5	“	STA 0+ 95.5	좌	“	
6	“	STA 0+ 172.6	우	“	
7	“	STA 0+ 197.7	우	“	
8	“	STA 0+ 209.9	우	“	
9	“	STA 0+ 217.9	우	“	
10	“	STA 0+ 220.7	우	“	
11	“	STA 0+ 231.2	우	“	
12	“	STA 0+ 233.8	우	“	

고양시 공고 제2014-378호

도시계획시설(대로1-11호선 외 3개 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관산동 제1차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한 도시계획시설(대로1-11호선 외 3개 노선)사업이 완료되어 같은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4. 3. 7.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7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대로1-11호선, 중로3-64호선, 소로1-69호선, 소로2-169호선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번호	구분	규 모			폭(m)	연장(m)	시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1	결정	대로	1	11	35	9,078	동산동 305	관산동 157	
	시행				35~38	89	동산동 305	관산동 157	
2	결정	중로	3	64	12~15	400	대로1-11	중로2-61	
	시행				12~15	50	대로1-11	중로2-61	
3	결정	소로	1	69	10	120	중로3-64	소로2-169	
	시행				10~13	70	중로3-64	소로2-169	
4	결정	소로	2	169	8	175	대로1-11	소로3-139	
	시행				8~9	53	대로1-11	소로3-13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관산동 제1차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민대식)
 - 주소 :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80-30번지 한오빌딩 3층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2008.05.13. ~ 2013.12.31.
6. 관계도서 : 게재생략

고양시 정보화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양시 정보화 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4. 03. 07.

고 양 시 장 (인)

1. 모집인원 : 7명
2. 응모기간 : 2014. 03. 07.(금) ~ 2014. 03. 27.(목) 20일간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응모자격
 -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 임·직원
단, 동일인이 고양시의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 불가
5. 위원의 주요 기능
 -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심의위원회 개최 연 1~2회 예정
6.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고양시청 정보통신과(정보관리팀)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미접수, 우편접수 3.27. 18:00 도착분에 한함)
 - ※ 신청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고시/공고”란에 게재
7. 위원 선정
 - 고양시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시장이 선정 위촉
 - 선정 결과는 2014. 04. 07.(월) 개별통보 예정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관리팀(☎ 8075-255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정보화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신청서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문)	성 별	
주 소	< 도로명 주소 기재 >		
최종학력		직 업	
연 락 처	전화번호(휴대폰)	E-mail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고양시 정보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4 년 3 월 일 신청인 : (인) 고양시장 귀하			

자 기 소 개 서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 현 소속 직책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참여사항을 필히 기재	
응모동기	
고양시 정보화를 위한 의견 등	
기타	

공 고

고양시공인조례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및 등록)와 제10조(공인의 폐기)에 의하여 신규·폐기 등록한 공인을 동 조례 제12조(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인의 명칭	신규인영	공인의 명칭	폐기인영
고양시덕양구 관산동장인 (민원사무전용)		고양시덕양구 관산동장인 (민원사무전용)	

2. 공인의 등록 사유 : 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신조 및 폐기
3. 최초사용(폐기) 연월일 : 2014. 3. 24.
4. 공고기관 : 고양시 덕양구청장

2014. 3. 7.

고양시 덕양구청장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2014 - 83호

공 고

고양시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폐기한 공인을 동조례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인 명 :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장인
2. 최초사용년월일 : 2014. 3. 24.
3. 신조사유 : 인증기 노후로 인한 교체
4. 신조·폐기공인 인영

신조공인명	공인의 인영	폐기공인명	공인의 인영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장인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장인	

2014. 3. .

고양시 일산서구 청장

